

항공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(제97조제1항 관련)

1. 일반기준

가. 처분의 내용

- 1) 이 별표에서 "자격등증명 취소"란 항공종사자 자격증명, 자격증명의 한정, 계기비행증명, 조종교육증명 및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을 취소하는 것을 말한다.
- 2) 이 별표에서 "효력정지"란 일정기간 항공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격을 정지하는 것을 말한다.

나. 처분기간의 산정

- 1) 하나의 행위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.
- 2) 하나의 비행 편에서 둘 이상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중 무거운 처분의 기준에 따르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.
- 3) 같은 위반행위가 연속하여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1회의 위반행위로 보아 처분하되,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여 처분한다. 다만, 위반사실을 인지하고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위반횟수별로 합산하여 산정한다.
- 4) 위반행위가 기장을 보조하는 운항승무원의 잘못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기장에 대한 처분 외에 그 운항승무원에 대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운항승무원에 대한 처분은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.
- 5)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최근 2년 이내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6) 5)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[5)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]의 다음 차수로 한다.
- 7) 위반행위가 적발되었으나, 법 제60조제2항 및 제6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을 면제받은 경우에는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.
- 8) 3)에서 "같은 위반행위"란 제2호의 같은 목(세부유형이 분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유형)의 위반행위를 말하며, 제2호가목29)·31)·35)·36)의 위반행위는 별표 35의 세부유형이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.

다. 처분의 조정

- 1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

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여 처분할 수 있다.

- 가) 항공안전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
- 나) 행위자가 항공안전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  
(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하며, 1회에 한하여 적용한다)
- 다) 위반행위를 한 항공종사자가 과거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는 경우(경미한 위반행위에 한한다)
- 라) 「공항시설법」 제2조제7호·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항시설 및 비행장시설의 미비·장애, 항공기에 사용한 부품의 결함 및 항공기 정비 등을 위해 사용한 장비 등의 오작동 등 외부적인 상황으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
- 마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2)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나목 및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려 처분할 수 있다.

- 가)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해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
- 나) 다른 항공기의 운항안전 또는 공중(公衆)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경우
- 다) 위반직후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위협을 증대시킨 경우
- 라)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,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

## 2. 개별 기준

### 가. 자격증명 등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내용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명등을 받은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1호	자격등증명 취소
2)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 가) 벌금 200만원 이상 나) 벌금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다) 벌금 100만원 미만	법 제43조제1항 제2호	자격등증명 취소 효력정지 50일 효력정지 30일
3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 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인명 피해를 발생한 경우 가)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나)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다) 중상자 외의 부상자가 발생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3호	자격등증명 취소 효력 정지 90일 이상 효력 정지 30일 이상
4)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	법 제43조제1항	

<p>사고를 일으켜 다음 각 목의 재산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</p> <p>가)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0억원 이상인 경우</p> <p>나)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인 경우</p> <p>다) 항공기 또는 제3자의 재산피해가 10억원 미만인 경우</p>	제3호	<p>자격등증명 취소</p> <p>효력 정지 90일 이상</p> <p>효력 정지 30일 이상</p>
5) 법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정비 등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제70조에 따른 방법으로 감항성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4호	<p>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/p> <p>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/p> <p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년</p>
6)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종류에 따른 업무범위 외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5호	<p>1차 위반: 효력 정지 150일</p> <p>2차 위반: 효력 정지 1년</p>
7) 법 제37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격증명의 한정을 받은 항공종사자가 한정된 종류, 등급 또는 형식 외의 항공기·경량항공기, 한정된 정비분야나 한정된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종류, 수행방식 및 항공교통관제 시설 외의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6호	<p>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</p> <p>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/p> <p>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</p>
8) 법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준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6호의2	자격등증명 취소
9) 법 제39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알선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6호의3	자격등증명 취소
<p>가)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 빌려 주는 행위</p> <p>나) 다른 사람의 성명을 사용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하거나 다른 사람의 항공종사자 자격증명서를</p>		

발리는 행위		
10) 법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신체검사증명을 받지 않고 항공 업무(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. 이하 18), 19) 및 22)에서 같다)에 종사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7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11)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항승무원 및 항공교통 관제사가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8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12) 법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체적·정신적 상태의 저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8호의2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13) 법 제42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결과를 통지받기 전에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8호의3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14)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계기 비행증명을 받지 않고 계기비행 또는 계기비행방식에 따른 비행을 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9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
15) 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종 교육증명을 받지 않고 조종교육을 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10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
16) 법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 영어구술능력증명을 받지 않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11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
17) 법 제55조를 위반하여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비행경험이 없이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공기를 운항하거나 계기 비행·야간비행 또는 법 제44조제2항에 따른 조종교육의 업무에 종사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12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
<p>18)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</p>	<p>법 제43조제1항 제13호</p>	<p>가. 주류의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혈중알코올농도 0.02 % 이상 0.06 % 미만: 효력 정지 60일</li> <li>2) 혈중알코올농도 0.06 % 이상 0.09 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</li> <li>3) 혈중알코올농도 0.09 % 이상: 자격증명 취소</li> </ol> <p>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/li> <li>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/li> <li>3) 3차 이상 위반: 자격증명 취소</li> </ol>
<p>19)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</p>	<p>법 제43조제1항 제14호</p>	<p>가. 주류의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혈중알코올농도 0.02 % 이상 0.06 % 미만: 효력 정지 60일</li> <li>2) 혈중알코올농도 0.06 % 이상 0.09 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</li> <li>3) 혈중알코올농도 0.09 % 이상: 자격증명 취소</li> </ol> <p>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/li> <li>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</li> <li>3) 3차 이상 위반: 자격증명 취소</li> </ol>
<p>20)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</p>	<p>법 제43조제1항제 15호</p>	<p>자격증명 취소</p>
<p>21) 법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항공기 내에서 흡연을 한 경우 가)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</p>	<p>법 제43조제1항 제15호의2</p>	<p>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</p>

한 경우		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
나) 주기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한 경우	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
22) 항공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항공기준사고,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 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16호	1
가)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항공안전위해요인을 발생시킨 경우		1차 위반: 효력 정지 15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75일
나)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대상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킨 경우	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23) 법 제62조제2항 또는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장이 다음 각 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17호	
가)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완료 확인의 의무	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
나) 여객구조 등의 의무	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자격등증명 취소
다) 항공기 사고, 항공기준사고 또는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발생사실의 보고 의무	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24) 조종사가 법 제63조에 따른 운항자격의 인정 또는 심사를 받지 않고 운항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18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25) 법 제65조제2항을 위반하여 기장이 운항관리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항공기를 출발시키거나 비행계획을 변경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19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: 자격등증명 취소

26) 법 제66조를 위반하여 이륙·착륙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이륙하거나 착륙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20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150일 3차 위반: 자격증명 취소
27) 법 제67조제1항을 위반하여 비행규칙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21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80일
28) 법 제68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행 또는 행위를 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22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: 효력 정지 1년
29) 법 제7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고 항공기로 위험물을 운송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23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90일 3차 위반: 자격증명 취소
30)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24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
31) 법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운항기술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25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
32) 법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비관제공역(非管制空域) 또는 주의공역(注意空域)에서 비행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26호	1차 위반: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정지 150일
33) 법 제79조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비행의 방식 및 절차에 따르지 않고 통제공역에서 비행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27호	1차 위반: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: 자격등증명 취소
34) 법 제84조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가 지시하는 이륙·이륙·착륙의 순서 및 시기와 비행의 방법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28호	1차 위반: 효력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정지 90일 3차 위반: 자격등증명 취소
35) 법 제90조제4항(법 제96조제1항	법 제43조제1항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

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운영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비행을 하거나 업무를 수행한 경우	제29호	2차 위반: 효력 정지 180일 3차 위반: 효력 정지 1년
36) 법 제93조제7항 후단(법 제96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을 위반하여 운항규정 또는 정비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제30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
37) 법 제108조제4항 본문에 따라 경량항공기 또는 그 장비품·부품의 정비사항을 확인하는 항공종사자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하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제1항제30호의2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위반: 효력 정지 90일
38) 자격증명등의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 기간에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제31호	자격등증명 취소

나. 항공신체검사증명

위반행위	근거 법 조문	처분내용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	법 제43조제3항제1호	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
2)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맞지 않게 되어 항공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	법 제43조제3항제3호	효력정지 30일 이상
3) 법 제40조제5항을 위반하여 한정된 항공업무(법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항공기 조종연습을 포함한다. 이하 5), 6) 및 7)에서 같다)의 범위를 준수하지 않고 항공업무를 한 경우	법 제43조제3항제4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4) 법 제41조에 따른 항공신체검사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제3항제5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
5) 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	법 제43조제3항 제6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150일
6) 법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주류 등의 영향으로 항공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서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13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	가. 주류의 경우 1) 혈중알코올농도 0.02 % 이상 0.06 % 미만: 효력 정지 60일 2) 혈중알코올농도 0.06 % 이상 0.09 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 3) 혈중알코올농도 0.09 % 이상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 3) 3차 이상 위반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
7) 법 제57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을 섭취하거나 사용한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1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	가. 주류의 경우 1) 혈중알코올농도 0.02 % 이상 0.06 % 미만: 효력 정지 60일 2) 혈중알코올농도 0.06 % 이상 0.09 % 미만: 효력 정지 120일 3) 혈중알코올농도 0.09 % 이상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 나. 마약류 또는 환각물질의 경우 1) 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2)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 3) 3차 이상 위반: 항공신체검사증명 취소

8) 법 제57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주류등의 섭취 및 사용 여부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	법 제43조제1항 제1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6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120일 3차 이상 위반: 항공신체검사 증명 취소
9) 법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항공 신체검사증명서를 소지하지 않고 항공업무에 종사한 경우	법 제43조제3항 제7호	1차 위반: 효력 정지 10일 2차 위반: 효력 정지 30일 3차 이상 위반: 효력 정지 90일